#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47 제출년월일 :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 7. 21.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특례 규정을 보완·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2항·3항·5항·6항, 제3조의2)
-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관리 계획 규정 정비(안 제10조제1항)
- 다. 「초지법」 제18조 개정으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초지에 대한 대부료율 신설(안 제25조제6항)

- 라.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감액 조정하는 특례 규정 정비(안 제31조)
- 마. 변상금의 징수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 특례 규정 신설(안 제89조의 2)
- 바. 적용 법령 관련 조례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7조의2, 제20조제1항·4항·5항, 제23조, 제28조제2항, 제71조 제4항, 제9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필요(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등 필요 경비)
- 다. 협의사항
  - 1) 기획예산과(사전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5. 9. 2.~9. 22.) 결과 : 의견 없음
  - 2) 신 · 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를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호선하여 선정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위원 중 영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과장 중에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

제17조의2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을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으로 하고,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제21조에 따라"를 "제21조에 의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바닥면적 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한다.

제31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의 "100분의 10 을"을 "100분의 5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8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9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2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의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업무) 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강서	
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는 <u>위원</u>	위원장_
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u>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15명 이하</u>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	은 기획재정국장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장이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	"심의회"라 한다)에서 호선하여 선정된
다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위원 중 영제7
	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
	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u>사람</u>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
	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
	직경력이 있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③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과장 중에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lt;신 설&gt;</u>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신 설>	<ul> <li>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li> <li>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li> <li>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수행하기 어려운 경우</li> <li>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li> <li>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li> </ul>
④ (생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당사				
	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u>경우</u>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				
	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u>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				
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이 구의	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구의회에 제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				
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	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				
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 <u>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디</u>	제17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
<u>상</u> )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	<u> 익허가 대상</u> )
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u>수의계약</u>	<u>수의의 방법으</u>
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기	로 사용·수익 허가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밀	<u>t</u>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	M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	] <u>제27조제4항</u>
<u>2항 및 제3항</u> , 영 제19조 및 제21조 규	및 제5항,
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 <u>제27조제4항</u> 의 규정에 따라 구	④ <u>제27조제6항</u>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힐	<u> </u>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5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u>제27조제6항</u>
및 영 <u>제21조에 따라</u> 입찰조건에 따리	제21조에 의한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u> </u>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u></u>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	
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	
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u>제2조제5항</u> 에	<u>제2조제8항</u>
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①~⑤(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⑤(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
	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98조(거무미브리 사츠기즈) ① (청해
\(\(\lambda \) \(\lambda \) \(\	과 같음)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u>바닥</u>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u>면적과</u>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	
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 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100분
의 10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 의 70으로 한다.	의 5 <u>100분의 5를</u>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 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u> 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89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 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u>한다.</u>
제92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제92조(공유토지의 분필)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	
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	
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	
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	
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에</u> 의	<u>감정평가업자에게</u>
뢰한다.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에</u> 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15-25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	급	성 명	류제혁
입안주무부서	재-	무과	통보(조	치 ) 일		2015. 9. 10.	
관 련 조	근문 검토결과				조 치 사 항		
- 원안동의				_			